의안 번호	96

2026. 10.

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

【공보관 소관】

창원시

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

【공보관 소관】

의안 번호	96

제출년월일 : 2026. 10. 16.
제 출 자 : 창 원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출연 동의내역

(단위 : 천원)

내 용	2027년	2026년	증 감
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	561,160	479,630	81,530

3. 관련법규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제2항 및 제3항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4. 참고자료

○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 현황

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

1. 주요내용

가. 출연기관 현황

○ 명칭/위치 :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/ 의창구 중동 776-7

○ 준공/개관 : 2023. 10. / 2023. 12.06.

○ 인　　력 : 10명(센터장 1, 팀장 1, 직원 8)

○ 설립목적 : 미디어에 관한 교육·체험,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등

○ 설립근거 : 방송법 제90조의 2(시청자미디어재단)

나. 예산편성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7년	2026년	증감*
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	561,160	479,630	81,530

* 증감사유 : 정원 증원, 시청자미디어재단 기획혁신부-2094(2026. 8. 31.)호 운영비 분담금 편성요청

다. 주요사업

○ (미디어교육) 미디어 교육 및 체험공간 운영,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

○ (제작지원) 방송 시설 및 장비 무료 대여, 영상 방송물 제작 지원

○ (접근성 제고) 장애인·노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제공(자막, 수화 등)

2. 법적근거

○「방송법」제90조의 2(시청자미디어재단) 제5항 및 제7항

3. 기대효과

○ 역량별 미디어교육 확대 및 강사 육성으로 지역 미디어 거점으로 성장

○ 지역 미디어 생태계 조성으로 미디어분야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확대

○ 소외계층(노인·장애인 등) 미디어 접근성 제고로 사회적 가치 실현

붙임　1. 관련법령 1부.

　　2. 출연기관 현황 1부.

붙임1 관련법령 및 업무협약

□ 방송법

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.

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.

③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미디어에 관한 교육 · 체험 및 홍보
2.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
3.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
4.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
5.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
6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.

⑥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⑧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학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제20조(재정지원)

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□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

제4조(운영비 등의 분담)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60%, 지방자체단체가 40%를 분담한다.

붙임 2 출연기관 현황(시청자미디어재단)

1 설립근거

○ 「방송법」 제90조의 2(시청자미디어재단)

-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

2 설립목적

○ 시청자의 미디어역량 강화와 참여 지원, 소외계층 권익증진 등을 통해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문화의 향상을 도모하여 미디어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

3 주요연혁

○ 2005. 11. 25. :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최초 개관
○ 2007. 06. 12. :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
○ 2014. 05. 28. :「방송법」 개정(방송법 제90조의2)
○ 2014. 07. 07. :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
○ 2014. 07. 16. :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
○ 2014. 08. 13. :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
○ 2015. 05. 15. : 법인 허가 및 재단 설립
○ 2015. 06. 30. :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
○ 2016. 02. 03. :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
○ 2016. 12. 16. :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
○ 2019. 11. 21. :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
○ 2020. 12. 01. :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
○ 2020. 12. 22. :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
○ 2023. 02. 01. : 기타공공기관 지정
○ 2023. 12. 06. :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
○ 2023. 12. 22. :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

4 주 요 업 무

○ 미디어에 관한 교육·체험 및 홍보

○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및 권익증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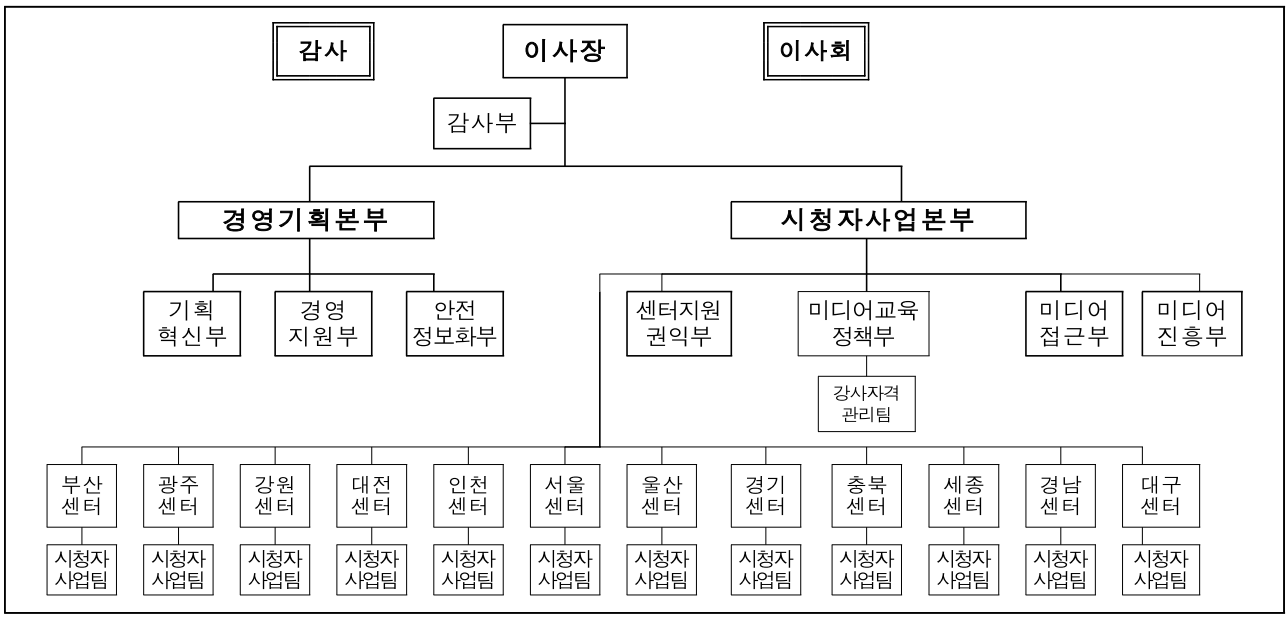
○ 장애인의 방송시청 및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 지원

○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

5 조직 및 인력 (2026. 9. 기준)

○ 조 직 : **1부** 2본부(7부, 1팀, 12센터)

[조직도]



○ 정 원 : 298명(임원 1명, 일반직 207명, 무기계약직 90명)

○ 임 원 : 상임 이사장 1명, 비상임 이사·감사 7명

6 예 산 현 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4	2025	2026
예 산 액	53,672	52,748	52,507
지자체 지원액	5,050	5,192	5,399

※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(경영평가) : 2026년도(25년 실적) 경영평가 결과 B등급
- (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) :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사업과 통합 필요(결과 : 통합)